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4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가 상위법과 불일치에 따라 개정(안 제8조)
- 나.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착오 인용 사항 수정 (안 제13조제6항)
- 다.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된 상위법 내용 조례 반영(안 제18조)
- 라. 법령에 규정된 명문대로 정비(안 제20조제1항)
- 마. 조례 각 호의 내용 중 상위법과의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중복사항 삭제 (안 제28조)
- 바.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정비하고, 잘못 인용된 사항 및 용어 정비(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)
- 사. 조례에서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유를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토록 개정(안 제37조)

아. 별표 중 명칭 및 내용 현행화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2. 13. ~ 3. 4. (20일)
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

- 제출일자 : 2020. 2. 26.[아현육아-2020-09호(2020.02.26.)]

- 제출의견 : 별표에 대한 명칭 및 내용 현행화

- 검토의견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명 및 검사명(검사유형 포함) 등에 대한 의견 반영하여 상정함

현 행	상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</u>  <u>사용료 등 세부기준</u>  (제13조제4항 관련)</p> <p>1. 사용료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용도</th> <th>단위</th> <th>상한액 (단위:원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사용료</td> <td>영유아놀이 프로그램</td> <td>월</td> <td>3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</td> <td></td> <td>무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상담료</td> <td>각종 치료 상담</td> <td>회</td> <td>30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검사료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검사명</th> <th>이용료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영유아용</td> <td>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(K-SSRSP)</td> <td rowspan="3">무료</td> <td>선별/발달</td> </tr> <tr> <td>아동발달선별검사(K-CDI)</td> <td>선별/발달</td> </tr> <tr> <td>영아발달선별검사(DEP)</td> <td>선별/발달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(생략)</td> <td>30,000원</td> <td>언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비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(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, 구민 문화체육센터, 어린이 영어도서관, 장난감 대여점 등)2개소 이상의 보육료 등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.</p>	구분	용도	단위	상한액 (단위:원)	비고	사용료	영유아놀이 프로그램	월	30,000		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		무료		상담료	각종 치료 상담	회	30,000		구분	검사명	이용료	비고	영유아용	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(K-SSRSP)	무료	선별/발달	아동발달선별검사(K-CDI)	선별/발달	영아발달선별검사(DEP)	선별/발달		(생략)	30,000원	언어	<p>[별표] 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</u>  <u>사용료 등 세부기준</u>  (제13조제4항 관련)</p> <p>1. 사용료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용도</th> <th>단위</th> <th>상한액 (단위:원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사용료</td> <td>영유아 프로그램</td> <td>월</td> <td>3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놀이체험실 이용</td> <td></td> <td>무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상담료</td> <td>각종 치료 및 상담</td> <td>회</td> <td>30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검사료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검사명</th> <th>이용료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영유아용</td> <td>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·교육진단 검사(DEP)</td> <td>무료</td> <td>발달 검사</td> </tr> <tr> <td>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</td> <td>무료</td> <td>사회성 검사</td> </tr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30,000원</td> <td>언어 검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준용한다.</p>	구분	용도	단위	상한액 (단위:원)	비고	사용료	영유아 프로그램	월	30,000		놀이체험실 이용		무료		상담료	각종 치료 및 상담	회	30,000		구분	검사명	이용료	비고	영유아용	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·교육진단 검사(DEP)	무료	발달 검사	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	무료	사회성 검사	(현행과 같음)	30,000원	언어 검사
구분	용도	단위	상한액 (단위: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료	영유아놀이 프로그램	월	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		무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담료	각종 치료 상담	회	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검사명	이용료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유아용	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(K-SSRSP)	무료	선별/발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아동발달선별검사(K-CDI)		선별/발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영아발달선별검사(DEP)		선별/발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생략)	30,000원	언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용도	단위	상한액 (단위: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료	영유아 프로그램	월	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놀이체험실 이용		무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담료	각종 치료 및 상담	회	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검사명	이용료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유아용	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·교육진단 검사(DEP)	무료	발달 검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	무료	사회성 검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현행과 같음)	30,000원	언어 검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 03. 24.)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- 8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제13조제6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제1항 전단 중 “법인단체”를 “법인·단체”로 한다.

제2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4조제1항에 따라”를 “영 제24조제1항 이외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, 제3호,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법 제27조”를 “법 제26조”로, “연장보육”을 “시간연장보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평가인증”을 각각 “평가”로 한다.

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40조”로, “일부 또는 전부”를 “전부 또는 일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  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 
(제13조제4항 관련)

1. 사용료

구 분	용 도	단 위	상 한 액 (단위:원)	비 고
사 용 료	영유아프로그램	월	30,000	
	놀이체험실 이용		무료	
상 담 료	각종 치료 및 상담	회	30,000	

2. 검사료

구분	검사명	이용료	비고
영유아용	아동발달검사 (K-CDI) 영아선별·교육진단검사 (DEP)	무료	발달검사
	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 (K-SSRSP)	무료	사회성검사
	영·유아언어발달검사 (SELSI) 수용·표현 어휘력 검사 (REVT)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 (PRES) 우리말 조음·음운평가 (U-TAP) 아동용 발음평가 (APAC)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맥아더-베이츠의사소통발달평가 (K-M-B CDI)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(P-FA)	30,000원	언어검사

비 고 :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준용한다.



제20조(위탁계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②·③ (생략)

제28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
2.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

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위탁계약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법인·단체 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지 아니한 경우

3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  
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  
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 
외에 사용한 경우

<삭 제>

4.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  
나 학대하는 등 「아동복지  
법」 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한  
경우

<삭 제>

5. 운영 위탁계약서 상의 계약 내  
용을 위반한 경우

<삭 제>

6.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에 따  
른 처분을 받은 경우

<삭 제>

제35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구청장  
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  
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음 각  
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 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 
수 있다.

제35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-----  
----- 영 제24조제1  
항 이외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·개축  
및 개·보수비용

<삭 제>

2. (생 략)

2. (현행과 같음)

3. 교재·교구비

<삭 제>

4.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  
훈련 비용

<삭 제>

5. (생 략)

5. (현행과 같음)
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
7. 법 제27조에 따른 연장보육 어린이집,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

8.·9. (생략)

10.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

11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

4. (생략)

제3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게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<삭 제>

7. 법 제26조----- 시간연장 보육 -----

8.·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평가 -----

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평가-----  
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) ----- 법 제40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전부 또는 일부-----.

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지,  
또는 취소된 경우
2.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  
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 
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
사용료 등 세부기준  
(제13조제4항 관련)

1. 사용료

구분	용도	단위	상한액 (단위:원)	비고
사용료	영유아놀이 프로그램	월	30,000	
	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		무료	
상담 료	각종 치료 상담	회	30,000	

2. 검사료

구분	검사명	이용료	비고
영유아 용	한국유아사회성기 술검사(K-SSRSP)	무료	선별/ 발달
	아동발달선별검사 (K-CDI)		선별/ 발달
	영아발달선별검사 (DEP)	선별/ 발달	
	(생략)	30,000원	언어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
사용료 등 세부기준  
(제13조제4항 관련)

1. 사용료

구분	용도	단위	상한액 (단위:원)	비고
사용료	영유아 프로그램	월	30,000	
	놀이체험실 이용		무료	
상담 료	각종 치료 및 상담	회	30,000	

2. 검사료

구분	검사명	이용료	비고
영유아 용	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·교육진단 검사(DEP)	무료	발달 검사
	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	무료	사회성 검사
	(현행과 같음)	30,000원	언어 검사

○ 비 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(자치구 육이종합지원센터, 구민 문화체육센터, 어린이 영어도서관, 장난감 대여점 등)2개소 이상의 보육료 등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.

비 고 :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자치구 육이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준용한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해당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 :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정우열 (☎ 3153-8905)**